

#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6.  
제출자 : 중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-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·운영 및 보건시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 1995. 12. 29 일자로 제정되었으며.
- 동법 제3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에는 동법시행령(96. 7. 13)제2조의 규정에 의거 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
-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법적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)
-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)

## 3. 주요내용

-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제2조, 제3조)
- 심의위원회의 회의등(제4조)
- 위원의 임기(제5조)
- 공청회 및 운영세칙(제7조, 제8조)

## 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(사본) : 붙임

##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제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영 제2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심의위원회의 회의등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보건과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공청회 등)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세칙)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5호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

### 2. 실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'98. 6. 23

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회부 : '98. 7. 15

라. 위원회상정 : '98. 7. 23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)

○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의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.

### 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갑진상)

○ 지역 보건법이 '95. 12. 29일자로 제정되어, 본 조례안은 '97. 7. 15 자치중구 출범당시 제정되어야 하나, 상정이 지체되었고 그간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시에도 기히 수립된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,

○ 본 조례안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, 보건의료 관련기관, 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전문가,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이는 전국적 표준안으로 예시되었다고 사료되는바, 우리중구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언급함이 타당함.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